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11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7 ~ 26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7 ~ 27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7
2007 ~ 28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26
2007 ~ 29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07 ~ 30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07 ~ 31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2007 ~ 3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	56
2007 ~ 33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61
2007 ~ 34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67
2007 ~ 35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74
2007 ~ 36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6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안 제3조)

-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마.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9조)

-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9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2)입법예고 : 해당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및 관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

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7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재래시장,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물,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

나.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안 제15조부터 제18조)

다.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

마.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33조)

사.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절차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39조)

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부터 제44조)

자. 유효기관 및 경과규정 등(안 부칙)

○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함

○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및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 제65조, 제67조, 제7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6조, 제35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8조, 제14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 「행정절차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세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주차장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소방기본법」 제15조, 「도로법」 제4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가소요예산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2007. 7. 26. ~ 8. 15.)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과 관리, 인정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임시시장, 농어민직영매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재래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등록시장”이라 한다)과 이와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어 군수가 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이하“인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2.“상인”이란 재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 3.“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 4.“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 6.“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7.“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 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 8.“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 9.“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적치물 경계선 위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및 관리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 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우리 군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설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어민은 우리 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신청, 정산 및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명부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④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매각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체결 된 것으로 본다.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 조례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변영회(「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등은 제외)등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시·도 시·군·구 징수관(인)				시·도 시·군·구 징수관(인)				시·도 시·군·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A80×160mm
신문용지 54kg/m²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겠습니다.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시·도 시·군·구 징수관(인)			시·도 시·군·구 징수관(인)			시·도 시·군·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인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인)</p> <p>거 창 군 수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8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안 제5조, 제6조)

-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행사시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안 제8조)

-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 기확보(105,600,000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7. 6. 1. ~ 6. 20.) 결과 : 의견없음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련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가보훈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우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중요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①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3.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9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간결하게 함

나. 용어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춤(안 제2조)

다.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6.25참전유공자로만 한정되어있는 지원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라.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

마. 제명 변경으로 인한 별지서식의 일부분구 수정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3. 개정근거

가. 관련법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가 소요금액 연간 20,000천원 정도

예산 확보 : 2008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7. 6. 1.~ 6. 20.)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6.25전쟁”을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으로 하며,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5.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

제3조 본문 중 “주소를 둔 자”를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제6호·제7호·제8호”를 “제6호·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①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6.25참전 유공자”를 “군수는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1호부터 제2호 중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제4호 중 “기타 6.25참전 유공자”를 “그 밖에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6.25참전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이하 “<u>법률</u>”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u>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u>(이하“<u>6.25참전 유공자</u>”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u>6.25참전 유공자</u>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u> 2. <u>6.25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u> 3. <u>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u>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u>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u>----- -----“<u>참전유공자</u>”----- ----- -----.</p> <p>제2조(정의) “<u>참전유공자</u>”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u>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u> 2. <u>6.25전쟁에</u> ----- ----- 3. ----- -----<u>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u>----- 4. <u>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u> 5. 「<u>병역법</u>」 또는 「<u>군인사법</u>」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u>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u>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수수료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음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0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다양해진 장묘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고, 공설일반묘지 중 재정비사업을 한 곳은 공설공원묘지로 분류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공설묘지조례」로 간결하게 함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장묘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
 - 납골 ⇒ 봉안(안 제2조·제6조·제13조·제15조·제16조의1)
 - 묘지에 매장 ⇒ 장묘시설에 안치(안 제5조제2항제2호)
 - 납골당 ⇒ 봉안시설(제16조의1)
-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
 - 각호 ⇒ 각 호(안 제2조·제6조)
 - 제16조의1 ⇒ 제16조의2(안 제16조의1)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안 제5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22조)
- 라. 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의 명칭을 수정함(안 별표 1)
 -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 고제공설공원묘지
- 마. 납골묘 및 납골당의 명칭을 수정함(안 별표 2)
 - 납골묘 ⇒ 봉안묘, 납골당 ⇒ 봉안당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7. 5. 21. ~ 6. 9.)결과 : 의견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공설묘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고 “거창군공설묘지(이하“공설묘지”라 한다)”를 “거창군공설묘지”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납골묘”를 “봉안묘”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납골탑”을 “봉안탑”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설묘지”를 “거창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묘지에 매장”을 “장묘시설에 안치”로 한다.

제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호 중 “납골묘·납골당”을 “봉안묘·봉안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법 제17조 제4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0조”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15조의 조제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16조의1 조제목 중 “납골유골”을 “봉안유골”로 하고, 제1항 중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하고, “제16조의1”을 “제16조의2”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거창군공설묘지</u>(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u>거창군공설묘지</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내의 매장묘지, <u>납골시설</u> 등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4. “<u>납골시설</u>”이라 함은 <u>납골묘</u>(분묘의 형태), <u>납골당</u>(「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u>납골탑</u>(탑의 형태로 된 공작물)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각 호</u>----- 1. ----- -----<u>봉안시설</u>----- ----- 2. ~ 3. (현행과 같음) 4. “<u>봉안시설</u>”-----<u>봉안묘</u>----- -----<u>봉안당</u>----- ----- <u>봉안탑</u>----- -----.</p>
<p>제3조(공설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한다.</p>	<p>제3조(공설묘지의 구분) <u>거창군공설묘지</u>(이하 “공설묘지”라 한다)----- -----.</p>
<p>제5조(사용허가등)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u>묘지에 매장하고자</u> 하는 경우</p>	<p>제5조(사용허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장묘시설에 안치</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면적) 1기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납골묘·납골당</u> : 안치단 1개 	<p>제6조(사용면적) -----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봉안묘·봉안당</u> -----
<p>제9조(설치기간) (생 략)</p> <p>① ~ ④ (생 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u>법 제17조 제4항</u>의 규정에 의거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9조(설치기간) (현행과 같음)</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법 제19조제4항</u>----- ----- --.</p>
<p>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u>법 제23조</u>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27조</u>----- ----- -----.</p>
<p>제12조(사용권의 취소)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u>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 3. (생 략) 	<p>제12조(사용권의 취소)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p>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p> <p>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u>법 제23조</u>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u>납골시설</u>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법 제20조</u>----- --<u>봉안시설</u>----- -----</p> <p>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분묘의 설치 및 납골시설 안치등) ①~③ (생 략)	제15조(분묘의 설치 및 <u>봉안</u> 시설 안치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 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u>납골당</u> 안치이후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 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 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6조의2(<u>봉안</u>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u>봉안</u> 시설----- ----- ----- <u>봉안</u> 시설 ----- ----- -----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장묘시설의 명칭등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적(m ²)
계	<u>6개소</u>	<u>77,156</u>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u>고제공설공원묘지</u>	<u>봉산리 1309</u>	<u>15,455</u>

2. 공설일반묘지

명 칭	위 치	면적(m ²)
합 계	<u>128필지</u>	<u>551,034</u>
소 계	5필지	16,034
거창정장공설일반묘지	정장리 산 89	6,149
거창장팔공설일반묘지	장팔리 산19	5,752
거창학리공설일반묘지	학리 산 70	2,182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56	959
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	양평리 산 169	992
소 계	14필지	42,850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37	6,545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3	873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127	4,638

명 칭	위 치	면적(m ²)
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	연교리 산 251	4,403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87	2,182
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	내오리 산 118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46	2,281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12	3,769
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	완대리 산 163	2,083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84	1,488
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136	225
주상거기공설일반묘지	거기리 산 7	4,760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08	5,537
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141	1,785
소 계	16필지	57,689
옹양죽림공설일반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옹양동호공설일반묘지	동호리 산 6	2,813
옹양노현공설일반묘지	노현리 산 16	4,007
옹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265	3,814
옹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187	2,678
옹양산포공설일반묘지	산포리 산 3	2,400
옹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4	992
옹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22	2,539
옹양군암공설일반묘지	군암리 산 19	5,795
옹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43	1,752

명 칭	위 치	면적(m ²)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75	4,469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23	2,704
용양신촌공설일반묘지	신촌리 산 141	4,046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15	1,868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39	3,769
용양한기공설일반묘지	한기리 산 43	2,664
소 계	13필지	55,83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88	3,174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4	15,570
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	농산리 산 125	4,562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71	4,36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211	1,686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100	3,074
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	개명리 산 53	1,884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158	3,273
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	봉계리 산 202	3,074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5	4,661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봉산리 산 21	2,479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198	5,950
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	궁항리 산 51	2,083
소 계	4필지	32,379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39	9,540
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87	9,818

명 칭	위 치	면적(m ²)
북상창선공설일반묘지	창선리 산 55	3,395
북상소정공설일반묘지	소정리 산 134	9,626
소 계	8필지	41,920
위천남산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41	4,959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54	2,308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43	9,421
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	상천리 산 33	2,224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60	8,529
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	강천리 산 33	4,959
위천황산공설일반묘지	황산리 산 37	2,380
위천당산공설일반묘지	당산리 산 17	7,140
소계	2필지	5,242
마리고학공설일반묘지	고학리 산 32	3,695
마리말흘공설일반묘지	말흘리 산 84	1,547
소계	15필지	85,497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253	6,760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1	3,174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10-4	1,785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69	8,132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141	9,521
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	대산리 산 37	11,107
남상둔동공설일반묘지	둔동리 산 168	3,967

명 칭	위 치	면적(m ²)
남상월평공설일반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남상송변공설일반묘지	송변리 산 54	9,917
남상전척공설일반묘지	전척리 산 124	3,174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159	9,223
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	오계리 산 224-1	2,869
남상임불공설일반묘지	임불리 산 119	3,174
남상춘전공설일반묘지	춘전리 산 83	3,074
남상진목공설일반묘지	진목리 산 27	2,876
소 계	11필지	56,765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66	5,296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36	9,322
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93	9,917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140	3,835
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	대야리 산 83	2,290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174	3,038
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	둔마리 산 20	5,355
남하양항공설일반묘지	양항리 214	3,269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53	4,311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201	6,750
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	지산리 산 12	3,382
소 계	8필지	42,398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249	4,615
신원구사공설일반묘지	구사리 산 75	9,276
신원덕산공설일반묘지	덕산리 산 190	1,587

명 칭	위 치	면적(m ²)
신원청수공설일반묘지	청수리 산 117	12,893
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65	2,579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149	3,084
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	대현리 산 38	2,704
신원과정공설일반묘지	과정리 산 38	5,660
소 계	16필지	72,50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4	7,438
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	석강리 산 137	4,469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171	1,342
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	기리 산 234	2,886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127	4,073
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	동례리 산 207-1	6,545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13	6,979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4	3,590
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	사병리 산 27	4,618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90	2,95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22	2,23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6	2,625
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	수월리 산 147	10,476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184	1,540
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	도리 산 207	1,911
가조장기공설일반묘지	장기리 산 11	8,826

명 칭	위 치	면적(m ²)
소 계	16필지	41,918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가북우혜공설일반묘지	우혜리 산 115	3,821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80	6,089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98	2,393
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	박암리 산 120	793
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31	2,436
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	몽석리 산 72	4,463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29	3,98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44	1,20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00	1,997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22	1,488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59	2,083
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	중촌리 산 103	2,245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169	1,957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39	1,7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87	1,369
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	해평리 산 227	3,825

【별표 2】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사용료(15년간)		관리비(3년간)		비 고
	기 준	금액(원)	기 준	금액(원)	
공설공원 묘지(매장)	1㎡당	18,000	1구당	36,000	
<u>봉안묘</u>	1개안치단당	18,000	1개안치단당	10,000	
<u>봉안당</u>	1개안치단당	60,000	1개안치단당	20,000	
공설일반 묘지(매장)	1㎡당	2,000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1
----------	-----------

제출일자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거창박물관조례”로 변경함.
- 나.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안 제1조).
- 다.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용어의 정의, 관람절차, 관람료 징수방법, 관람료 면제조항 등)
- 라.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5조).
- 마.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함
- 바. 박물관자료의 취득,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사. 관람자의 행위제한,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0,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5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07. 7. 31. ~ 8. 25.)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박물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거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규정

- 하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전시 및 연구
2. 향토사 및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 · 조사 · 연구
 3. 박물관자료와 관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공무원)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취득) 박물관자료는 수집,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8조(박물관자료의 구입)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제9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변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자료, 관람시설, 물품 등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위원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2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의 육성(안 제3조)

-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나. 생활체육의 육성(안 제4조)

-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다. 직장체육의 육성(안 제5조)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 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라. 학교체육의 진흥(안 제6조)

-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 포상(안 제7조)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바. 경비의 지원(안 제8조)

-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 보급,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667,600천원(2007년 당초예산)
307-02(민간경상보조) 44,000천원
307-04(민간행사보조위탁)623,6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7. 6. 22. ~ 7. 11.)결과 : 의견없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회”란 군내 경기단체(이하“경기단체”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체육경기 개최와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내 체육단체(이하“체육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5.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①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④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보급
5.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6.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7.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3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 등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나.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술보급, 과제발굴,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 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마.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고발 등
- 바.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며, 사업단은 생산자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함
 -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사업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 수립·변경, 광역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17조, 제19조

「농업·농촌기본법」 제9조,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07년 32억 7천만원 당초예산 확보

매년 25%증액 총 268.4억원 투입계획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입법예고(2007. 6. 21. ~ 7. 11.)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창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란 1,000Ha 이상의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조직한 영농단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농업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자,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산림환경과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주사가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생산·저장·가공·유통과 관련된 사업
3.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보조·지원사업 수행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
4. 부지사용승낙서

제10조(친환경농산물의 관리) ①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믿음과 신뢰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규제 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지원을 중단한다.
2.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영농법인, 농업인이 속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지원을 중단한다.

③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한 영농법인과 농업인은 법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친환경농산물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 ①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체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체 대표,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장이 소집하며,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사업단장은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
2.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3.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
4.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
5.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중요사항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4
----------	-----------

제출연월일	2007. 9.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 : 거창군 삶의 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나. 주요시설(안 제4조)

-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별 주요시설 규정

다. 주요사업내용(안 제5조)

-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취미·소양교육,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

라.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계약시 기간 : 3년 이내, 재위탁 가능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능

마. 기구 및 인원(안 제7조)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
- 위·수탁의 경우 관장 및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 승인

바. 시설의 사용료(안 제8조)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 명시

아. 위탁의 정지 및 취소(안 제10조)

- 수탁자 의무 위반, 협약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시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

자. 손해배상(안 제11조)

- 시설 및 비품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차. 준용(안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임

다.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07. 8. 28. ~ 9. 16.)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

②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회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시설) ①삶의 쉼터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한다.

②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강당(대·소), 회의실, 생활·건강상담실
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
3. 장기·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
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

③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요리교실, 취미교실
2. 자원봉사자실

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
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

④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
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
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제5조(주요사업내용) 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교양·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운영) ①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삶의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기구 및 인원) ①삶의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①삶의 컴퓨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거창군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그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삶의 쉼터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	법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위·수탁 운영기간				
위·수탁 관리목적				

위와 같이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의 정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5
----------	-----------

제출연월일	2007. 9.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안 제2조)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안 제3조)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심의 후 통보

○정부·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 생략

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1000이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5/1000 이상

라.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 구성(안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사.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

아. 위원회 회의(안 제10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7. 6. 14. ~ 7. 3)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군수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의료시설 중 병원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 후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미술장

식으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건축주는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1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1,000분의 5이상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영 제24조의3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1부.
2.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 평가서 1부(소장품 또는 기증품일 경우)
3. 미술장식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건축주와 작가 또는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4. 작가경력서 사본 1부.
5.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A3규격 황으로 합철, 10부)
 - ① 건축개요, ② 주위현황도, ③ 건축물투시도, ④ 미술장식 개요, ⑤ 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⑥ 작품설명서, ⑦ 작품사진(정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⑧ 작품도면(규격표시,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⑨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6. 조각 등 입체조형물인 경우에는 작품모형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1점, 회화나 서예 등 평면인 경우에는 작품사진(11" × 14") 1매 제출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
7. 미술장식 설치 비용 산출내역 1부.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36
----------	----------

제출년월일	2007. 9. 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2007. 1. 5.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하여 도로 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로 변경함
 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안 별표 1)
- 도로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
 - 평균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 유지
 - 점용물의 종류 신설 및 수정(안 제1호부터 제3호)
 - 돌출간판 신설, 진입로 ⇒ 진·출입로 등
 - 법령변경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명 수정 및 자구 수정(안 비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43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에
-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입법예고(2007. 08. 27 ~ 2007. 09. 15)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①도로를”을 “도로를”으로 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u>	<u>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u>
<p>제7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 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로서 <u>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 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2의 점용 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u>도로를</u>..... <u>제5조에 따라</u>.....</p>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 간 단 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이후	
1. 전주, 공 중전화, 송 전탑 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690	780	850	850	85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합,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 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 수관, 전기통신관, 가스 관, 송유관, 송열관, 전 기관, 작업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170	190	200	200	200
		지름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300	340	380	400	400	400
		지름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600	690	780	850	850	850
		지름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200	1,370	1,540	1,650	1,650	1,650
		지름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500	1,720	1,930	2,050	2,050	2,050
		지름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750	4,300	4,860	5,200	5,200	5,200
		지름3.0미터 초과			5,250	6,020	6,800	7,250	7,25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230	260	290	300	300
		지름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50	510	570	600	600	600
		지름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350	1,540	1,740	1,850	1,850	1,850
		지름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800	2,060	2,330	2,500	2,500	2,500
		지름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350	3,840	4,330	4,600	4,600	4,600
		지름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600	6,430	7,260	7,750	7,750	7,750
		지름3.0미터 초과			7,850	9,010	10,180	10,850	10,850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2,500	14,350	16,210	17,250	17,2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50	50	50	50	50	50
		기타의 용도	표시면적 1㎡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150
	아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34,440	38,920	41,400	41,400	41,400	41,40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승강대, 화물적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100원 단위로, 그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단위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1,400원, 1,995원=1,900원)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통신시설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